1. 공무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직업공무원제도는 헌법상 제도가 아니라 법률상 제도이다.
② 헌법상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는 공무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③ 직업공무원제도에서 말하는 공무원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근로관계를 맺고 이른바 공법상 특별권력관계 아래 공무를 담당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④ 직업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공성·공정성·성실성 및 중립성 등이 요구된다.
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지는 공직자에 해당한다.
1. 정답 ①
① (×) 직업공무원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적 보장중의 하나임이 분명하다(헌재 1997.4.24, 95헌바48).
② (○) 공무원은 공직자인 동시에 국민의 한 사람이기도 하므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와 기본권을 향유하는 기본권주체로서의 지위라 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는바, 공무원이라고 하여 기본권이 무시되거나 경시되어서는 안 되지만, 공무원의 신분과 지위의 특수성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에 비해 보다 넓고 강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게 된다(헌재 2012.3.29., 2010헌마97).
③ (○) 우리나라는 직업공무원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이 집권세력의 논공행상의 제물이 되는 엽관제도(獵官制度)를 지양하고 정권교체에 따른 국가작용의 중단과 혼란을 예방하고 일관성있는 공무수행의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는 공직구조에 관한 제도이다.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근로관계를 맺고 이른바 공법상 특별권력관계 내지 특별행정법관계 아래 공무를 담당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협의의 공무원을 말하며 정치적 공무원이라든가 임시적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헌재 1989.12.18, 89헌마32).
④ (○) 공무원은 그 임용주체가 궁극에는 주권자인 국민 또는 주민이기 때문에 국민전체에 대하여 봉사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특별한 지위에 있고, 그 업무의 공공적 성격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공공성・공정성・성실성 및 중립성 등이 요구된다(헌재 2015.5.28, 2013헌마343).
⑤ (○)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총괄·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연히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지는 공직자에 해당한다(헌재 2004.5.14, 2004헌나1).

2.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감사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의 수는 현재 7인이지만, 10인으로 증원하려면 헌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과 감사원장은 모두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를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④ 헌법은 감사원의 규칙제정권을 직접 규정하고 있다.
⑤ 감사원은 감사 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무총리,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감사 결과를 통지할 수 있을 뿐, 법령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없다.
2. 정답 ②
① (×) 감사원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감사원법 제3조).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헌법 제98조 제1항).
② (○)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헌법 제98조 제2항).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헌법 제98조 제3항).
③ (×)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헌법 제97조).
④ (×) 감사원은 감사에 관한 절차, 감사원의 내부 규율과 감사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감사원법

제52조).
⑤ (×)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조치 또는 개선의 결과를 감사원에 통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감사원법 제34조 제2항).
감사원은 감사 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무총리,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법령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조치나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감사원법 제34조 제1항).

3.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억원이 선고된 경우에 징역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은 병과된 벌금형에 대하여도 사면의 효력이 당연히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하는 경우, 그 상신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사면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사면은 형의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을 상실시키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고유한 권한을 의미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제도로서 권력분립원리에 대한 예외가 된다.
④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유력 정치인 甲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하여 시민단체 乙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은 부적법하다.
⑤ 복권은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하지 아니한다.
3. 정답 ①
① (×) 여러 개의 형이 병과된 사람에 대하여 그 병과형 중 일부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그에 대한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은 경우, 그 특별사면의 효력이 병과된 나머지 형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병과된 신청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내용의 특별사면이 그 벌금형의 선고의 효력까지 상실케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7.10.13, 96모33).
② (○)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 상신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사면심사위원회를 둔다(사면법 제10조의2 제1항).
③ (○) 사면은 형의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을 상실시키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고유한 권한을 의미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제도로서 권력분립의 원리에 대한 예외가 된다(헌재 2000.6.1, 97헌바74).
④ (○)
⑤ (○) 복권은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하지 아니한다(사면법 제6조).

4. 국회의 헌법기관구성 관여권한 및 인사청문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대통령이 국회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후보자, 한국은행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 각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연다.
④ 국회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⑤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겸하는 경우 소관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겸하는 것으로 보는 인사청문회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열어야 한다.
4. 정답 ①
① (×)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헌

법 제98조 제2항).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헌법 제98조 제3항).
② (○)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헌법 제67조 제2항).
③ (○)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국회법 제65조의2 제1항).
1. 대통령이 각각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국무위원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국가정보원장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금융위원회 위원장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국세청장 · 검찰총장 · 경찰청장 · 합동참모의장 · 한국은행 총재 · 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후보자
④ (○) 국회는 헌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 · 헌법재판소장 · 국무총리 · 감사원장 및 대법관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임명동의안 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출한 선출안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국회법 제46조의3 제1항).
⑤ (○)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겸하는 경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관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겸하는 것으로 본다(국회법 제65조의2 제5항).

5.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② 예산안을 회부받은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③ 정부는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④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다.
5. 정답 ⑤
① (○)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헌법 제57조).
② (○) 예산안과 결산은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국회법 제84조 제1항).
③ (○)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국가재정법 제89조 제1항).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④ (○)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헌법 제54조 제2항).
⑤ (×)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국가재정법 제22조 제1항).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헌법 제55조 제2항).

6. 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960년 6월 헌법(제3차 개정헌법)에서 최초로 정당규정을 명시하였다.
②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③ 정당이 아닌 단체에게 정당만큼의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의 평등권이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④ 헌법은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의 보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⑤ 무소속후보자에게만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도록 한 것이 정당후보자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6. 정답 ③
① (○)
② (○)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헌법 제8조 제4항).
③ (×) 정당이 아닌 단체에게 정당만큼의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을 허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곧 그것이 그러한 단체의 평등권이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 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헌재 1995.5.25, 95헌마105).
④ (○)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헌법 제8조 제1항).
⑤ (○) 무소속후보자에게만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도록 한 것이 정당후보자와 불합리한 차별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6.8.29, 96헌마99).

7.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납금제를 금지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운송수입금 전액을 수납하도록 하는 것과 운송종사자에게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은 기업의 자유·계약의 자유·단체협약체결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위반이다.
②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③ 헌법재판소는 현행 헌법상의 경제질서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본다.
④ 헌법상 보장되는 소비자보호운동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소비자불매운동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는 없고,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형사책임이나 민사책임이 면제된다.
⑤ 농지개량사업의 시행 도중에 그 지역 내의 토지 권리관계에 변경이 생긴 경우, 당해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도 그 승계인에게 이전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헌법 제119조제1항의 시장경제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7. 정답 ①
① (×) 사납금제를 금지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수입금 전액 수납의무와 운수종사자의 운송수입금 전액 납부의무를 규정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및 제33조의5 제2항이 기업의 자유 · 계약의 자유 · 단체협약체결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1998.10.29, 97헌마345).
② (○)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헌법 제126조).
③ (○)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 ·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헌재 2001.6.28, 2001헌마132).
④ (○) 소비자보호운동의 일환으로서, 구매력을 무기로 소비자가 자신의 선호를 시장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려는 시도인 소비자불매운동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는 없고,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형사책임이나 민사책임이 면제된다고 할 수 있다(헌재 2011.12.29, 2010헌바54).

⑤ (○) 농지개량사업 시행지역 내의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도 승계인에게 이전되도록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농지개량사업의 계속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는 농촌근대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오히려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하는 제도라 할 것이므로, 이는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시장경제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헌재 2005.12.22, 2003헌바88).

8. 우리나라 헌법사에서 나타난 대통령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980년 헌법(제8차 개정헌법)부터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제로 채택하였다.
② 현행 헌법에서는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경우 선거권자 총수의 과반수의 득표가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③ 1972년 헌법(제7차 개정헌법)에서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간선제를 채택하고 토론 없이 기명투표로 대통령을 선거하였다.
④ 1972년 헌법(제7차 개정헌법)과 1980년 헌법(제8차 개정헌법)을 제외한 헌법에는 국회가 대통령을 선출할 기회가 규정되어 있다.
⑤ 국민이 결선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이 있다.
8. 정답 ④
① (×) 9차 개정헌법이다
② (×)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헌법 제67조 제3항).
③ (×) 토론없이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였다.
④ (○)
⑤ (×) 8차 개정헌법(제5공화국 헌법)에 규정되어 있었다.

9.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시각장애인에 한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규정은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②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일반음식점영업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규정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국민의 생명·건강에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민간자격의 신설·관리·운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자격기본법」 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
④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위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⑤ 변호사시험의 응시기간과 응시횟수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 또는 취득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9. 정답 ④
① (×) 시각장애인에 대하여만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비맹제외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서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8.10.30, 2006헌마1098).
② (×) 2015. 1. 1.부터 모든 일반음식점영업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 중 '일반음식점영업소' 부분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16.6.30, 2015헌마813).
③ (×) 국민의 생명 · 건강에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민간자격의 신설 · 관리 · 운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자격기본법이 직업선택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10.7.29,

2009헌바53).
④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형을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하여금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제외한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개설하거나 그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 제13호 내지 제17호 중 각 ‘성인대상 성범죄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헌재 2016.10.27, 201헌마709).
⑤ (×) 변호사시험의 응시기간과 응시횟수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 또는 취득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이 변호사시험에 5회 모두 불합격한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16.9.29, 2016헌마47).

10.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입법자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재산권 질서를 새로이 형성함에 따라 상가임차인이 누리게 되는 임차권은 헌법상의 재산권에 해당한다.
②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수익적 입법의 시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한다.
③ 대법원 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관행어업권은 물권에 유사한 권리로서 공동어업권이 설정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것이고 헌법상 재산권에 해당한다.
④ 공무원의 보수청구권은 법률 및 법률의 위임을 받은 하위법령에 의해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의 권리로서 재산권에 포함된다.
⑤ 주주권은 보통의 채권과는 상이한 성질을 갖지만, 주주의 자격과 함께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대상에 해당한다.
10. 정답 ②
① (○) 입법자가 상가임대차법을 통해 재산권 질서를 새로이 형성함에 따라 상가임차인이 누리게 되는 임차권, 즉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이 인정되며, 보증금을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회수할 수 있고, 계약갱신요구를 통해 일정한 임대차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등 민법상 임차권에 비해 강화된 상가임대차법상 임차권은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라고 볼 수 있으므로, 헌법에서 인정하는 재산권 보장의 대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헌재 2014.3.27, 2013헌바198).
② (×) 시혜적 입법의 시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08.9.25, 2007헌가9).
③ (○) 대법원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관행어업권은 물권에 유사한 권리로서 공동어업권이 설정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 존속에 있어서도 공동어업권과 운명을 같이 하지 않으며 공동어업권자는 물론 제3자에 대하여서도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9.7.22, 97헌바76).
④ (○) 공무원의 보수청구권은, 법률 및 법률의 위임을 받은 하위법령에 의해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의 권리가 되어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헌재 2008.12.26, 2007헌마444).
⑤ (○) 주주권은, 비록 주주의 자격과 분리하여 양도ㆍ질권 설정 ㆍ압류할 수 없고 시효에 걸리지 않아 보통의 채권과는 상이한 성질을 갖지만, 다른 한편 주주의 자격과 함께 사용(결의)ㆍ수익(담보제공)ㆍ처분(양도ㆍ상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사적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권리’로 볼 수 있으므로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헌재 2008.12.26, 2005헌바34).

11.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 국정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되며, 이는 진행 중인 사건에서 법관의 소송지휘를 조사하거나 재판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② 법관의 인사는 원칙적으로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므로 대통령은 대법원의 구성에도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법관의 파견근무요청이 있을 경우에 업무의 성질상 법관을 파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고 당해 법관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④ 집행유예의 요건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형법」규정이 법관의 양형판단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거나 사법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⑤「법관징계법」상 법관의 징계처분에는 정직·감봉·견책의 세 종류가 있다.
11. 정답 ②
① (○)
② (×)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헌법 제104조 제1항).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헌법 제104조 제2항).
③ (○) 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법관의 파견근무 요청을 받은 경우에 업무의 성질상 법관을 파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고 해당 법관이 파견근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제50조).
④ (○) 집행유예의 요건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 법관의 양형판단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거나 사법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1997.8.21, 93헌바60).
⑤ (○)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 · 감봉 · 견책의 세 종류로 한다(법관징계법 제3조 제1항).

12.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대통령에 대한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과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에 대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단체에의 가입·활동 등을 금지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2. 정답 ③
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헌법 제114조 제2항).
②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2007. 6. 7.자의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조치'와 2007. 6. 18.자의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 재촉구 조치'가 기본권침해 가능성 있는 공권력의 행사이다(헌재 2008.1.17, 2007헌마700).
③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 · 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헌법 제114조 제6항).
④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에 대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 반대하는 단체에의 가입 · 활동 등을 금지하는 것이 선관위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12.3.29, 2010헌마97).
⑤ (○)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선거관리위원회법 제16조 제1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받거나 협조요구를 받은 행정기관 · 공공단체등은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선거관리위원회법 제16조 제3항).

13. 정당해산심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이 있는 경우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은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모두 상실된다.
②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처분에 의해 진보적 야당이 등록취소되어 사라지고 말았던 우리나라 현대사에 대한 반성의 산물로서 현행 헌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것이다.
③ '정당의 목적'은 정당의 공식적인 강령이나 당헌에 나타나고 정당대표나 주요 당직자 등의 공식적 발언 등에서도 파악될 수 있지만, 정당의 이념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당원들의 행위도 정당의 목적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④ 정당해산심판의 사유로서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란 민주사회의 불가결한 요소인 정당의 존립을 제약해야 할 만큼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하여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⑤ 헌법재판소에 의한 강제적 정당해산은 헌법 제8조제4항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도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만 가능하다.
13. 정답 ②
① (○)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이 있는 경우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은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모두 상실되어야 한다(헌재 2014.12.19, 2013헌다1).
② (×) 2공화국 헌법(3차 개헌)에서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③ (○) '정당의 목적'이란, 어떤 정당이 추구하는 정치적 방향이나 지향점 혹은 현실 속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정치적 계획 등을 통칭한다. 이는 주로 정당의 공식적인 강령이나 당헌의 내용을 통해 드러나겠지만, 그밖에 정당대표나 주요 당직자 등의 공식적 발언, 정당의 기관지나 선전자료와 같은 간행물, 정당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거나 정당의 이념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당원들의 행위 등도 정당의 목적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헌재 2014.12.19, 2013헌다1).
④ (○)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해산심판의 사유를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사회의 불가결한 요소인 정당의 존립을 제약해야 할 만큼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하여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헌재 2014.12.19, 2013헌다1).
⑤ (○) 강제적 정당해산은 헌법상 핵심적인 정치적 기본권인 정당활동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제한이므로, 헌법재판소는 이에 관한 결정을 할 때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례원칙을 준수해야만 한다(헌재 2014.12.19, 2013헌다1).

14.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948년 헌법(제헌헌법)은 탄핵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탄핵재판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②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헌법재판소는 소추의결서에 표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소추위원이 심판절차에서 임의로 추가한 부분은 판단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④ 「헌법재판소법」이 직무상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 탄핵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법위반이 어느 정도로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지의 관점'과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경우 초래되는 효과'를 서로 형량하여 파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⑤ 피청구인이 탄핵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된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14. 정답 ④

① (○)
② (○)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헌법 제65조 제2항).
③ (○) 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탄핵심판절차에서 소추위원이 임의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4.5.14, 2004헌나1).
④ (×) 헌법재판소법은 제53조 제1항에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헌법 제65조 제1항의 탄핵사유가 인정되는 모든 경우에 자동적으로 파면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문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위반을 이유로 파면을 해야 한다면, 이는 피청구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헌법적 징벌의 요청 즉, 법익형량의 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의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모든 법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단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를 말한다.
'법위반이 중대한지' 또는 '파면이 정당화되는지'의 여부는 그 자체로서 인식될 수 없는 것이므로, '법위반이 어느 정도로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지의 관점'과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경우 초래되는 효과'를 서로 형량하여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지의 여부 즉, 파면여부를 결정해야 한다(헌재 2004.5.14, 2004헌나1).
⑤ (○)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2항).

15. 국회의 해임건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 해임건의권은 대정부통제권의 하나이다.
② 해임건의의 사유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하는 탄핵소추의 사유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다.
③ 헌법은 명문으로 행정각부의 장이 아닌 국무위원은 해임건의의 대상자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④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⑤ 헌법재판소는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가 의결되더라도 대통령은 해당 국무위원을 해임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다.
15. 정답 ③
① (○)
② (○)
③ (×)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헌법 제63조 제1항).
④ (○) 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헌법 제63조 제2항).
⑤ (○) 국회의 해임건의는 대통령을 기속하는 해임결의권이 아니라,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해임건의에 불과하다(헌재 2004.5.14, 2004헌나1).

16.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것은 관용과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다원적인 '열린사회'에 대한 헌법적 결단이다.
② 시위의 자유는 집회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이다.
③ 헌법 제8조제1항 전단의 '정당설립의 자유'는 헌법 제21조제1항의 '결사의 자유'의 특별규정이다.
④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조합은 헌법 제21조제1항에 의해 보호되는 '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지만, 장소선택의 자유까지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16. 정답 ⑤

① (○)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것은 관용과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다원적인 '열린사회'에 대한 헌법적 결단인 것이다(헌재 2014.4.24, 2011헌가29).

② (○) 시위의 자유 또한 집회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이다(헌재 2014.2.24, 2011헌가29).

③ (○) 정당설립의 자유는 비록 헌법 제8조 제1항 전단에 규정되어 있지만 국민 개인과 정당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고, 당연히 이를 근거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당법상 정당등록요건을 다투는 정당(청구인)이 청구한 사건에서도 헌법 제21조 제1항 결사의 자유의 특별규정으로서, 헌법 제8조 제1항 전단의 '정당설립의 자유'가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기본권이라고 할 것이다(헌재 2006.3.30, 2004헌마246).

④ (○)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조합은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의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한다는(동법 제1조) 공공목적을 위하여 법이 구성원의 자격을 제한적으로 정해 놓은 특수조합이어서 이는 헌법상의 결사의 자유가 뜻하는 헌법상 보호법익의 대상이 되는 단체가 아니다(헌재 1994.2.24, 92헌바43).

⑤ (×)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한다.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주요행위는 집회의 준비 및 조직, 지휘, 참가, 집회장소·시간의 선택이다(헌재 2003.10.30, 2000헌바67).

17. 정보의 자유와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알권리의 실현은 법률의 제정이 뒤따라 이를 구체화시키는 것이 충실하고도 바람직하지만, 헌법 제21조에 의해 간접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

② 구속적부심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거부한 경찰서장의 정보비공개결정은 변호인의 알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③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상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을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큼의 실질가치를 지닌 사실, 물건 또는 지식으로 한정 축소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④ 한국방송공사의 미방영프로그램은 기획·편성·제작 등에 관한 정보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⑤ 헌법재판소는 알권리가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본다.

17. 정답 ①

① (×) "알 권리"의 실현은 법률의 제정이 뒤따라 이를 구체화시키는 것이 충실하고도 바람직하지만, 그러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헌법 제21조에 의해 직접 보장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인 것이다(헌재 1991.5.13, 90헌마133).

② (○) 구속적부심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거부한 경찰서장의 정보비공개결정이 변호인의 피구속자를 조력할 권리 및 알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2003.3.27, 2000헌마474).

③ (○) 구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 "국가기밀"의 일반적 의미 내지 실질적 요건 및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과 죄형균형의 요청, 그리고 국가안보와 국민의 표현의 자유 내지 "알 권리"와의 조화의 요청 등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 제1항 제2호 중단에 관한 부분"은 그 소정의 "국가기밀"을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큼의 실질가치를 지닌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이라고 해석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한정해석을 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1997.1.16, 89헌마240).

④ (○) 방송사의 취재활동을 통하여 확보한 결과물이나 그 과정에 관한 정보 또는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등에 관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

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대판 2010.12.23, 2008두13101).
⑤ (○)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으며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이다(헌재 1991.5.13, 90헌마133).

18. 양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특정한 내용의 행위를 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일간지 등에 공표하도록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 음주측정요구에 처하여 고민 끝에 어쩔 수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국가보안법」 위반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수형자의 가석방 결정 시 준법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서약자의 양심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다.
④ 「민사집행법」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 진실함을 법관 앞에서 선서하도록 하는 것은 채무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⑤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가해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18. 정답 ⑤
① (○) 공정거래위원회의 실제 운용에 있어서도 ‘특정한 내용의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일간지 등에 공표하라는 것이어서 단지 사실관계와 법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공표하라는 것이지 행위자에게 사죄 내지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사죄 내지 사과를 강요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심의 자유의 침해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법위반사실의 공표’ 부분은 위반행위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2.1.31, 2001헌바43).
② (○) 음주측정요구에 처하여 이에 응하여야 할 것인지 거부해야 할 것인지 고민에 빠질 수는 있겠으나 그러한 고민은 선과 악의 범주에 관한 진지한 윤리적 결정을 위한 고민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고민 끝에 어쩔 수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하여 내면적으로 구축된 인간양심이 왜곡·굴절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을 두고 헌법 제19조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7.3.27, 96헌가11).
③ (○) 국가보안법위반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수형자의 가석방 결정시 준법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한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제14조가 준법서약의 내용상 서약자의 양심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헌재 2002.4.25, 98헌마425).
④ (○)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 진실함을 법관 앞에서 선서하는 것은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의 가치적·윤리적 판단에 해당하지 않아 양심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아니고, 감치의 제재를 통해 이를 강제하는 것이 형사상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 및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14.9.25, 2013헌마11).
⑤ (×) 민법 제764조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1991.4.1, 89헌마160).

19.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성매매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②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하는 것은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양심영역이나 성적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보호, 인격적인 감정세계의 존중의 권리와 정신적인 내면생활이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등이다.
③ ‘음란한 물건을 판매한 자’와 ‘판매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소지한 자’에 대한 형벌규정은 성기구 판매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소비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④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 및 그와의 상간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규정은 개인의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을 형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국민의 성풍속 등을 고려할 경우 성적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⑤ 교도소 수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거실이나 작업장을 검사하도록 하는 법무부 훈령인 「계호업무지침」은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수형자의 교화・개선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물품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19. 정답 ②
① (×) 성매매를 한 자를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16.3.31, 2013헌가2).
②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하는 것은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양심영역이나 성적 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보호, 인격적인 감정세계의 존중의 권리와 정신적인 내면생활이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등이다(헌재 2003.10.30, 2002헌마518).
③ (×) 형법 제243조 중 '음란한 물건을 판매한 자' 에 관한 부분 및 제244조 중 '판매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소지한 자' 에 관한 부분이 성기구 판매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소비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 및 그와의 상간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241조가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2015.2.26, 2009헌바17).
⑤ (×) 교도소장이 수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실시한 거실 및 작업장 검사행위는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수형자의 교화・개선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물품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적절하며, 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보이고, 달리 덜 제한적인 대체수단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검사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1.10.25, 2009헌마691).

20.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을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 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은 '서로 상이한 권리주체간' 의 권한쟁의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
②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의회 의장 간의 권한쟁의심판은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③ '국민' 인 청구인은 그 자체로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국민' 인 청구인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되는 '국가기관' 이 아니다.
④ 헌법재판소는 '제3자 소송담당' 을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소수파 의원들이 일정한 요건 하에 국회를 대신하여 국회의 권한침해를 다툴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⑤ 청구인이 법률안 심의·표결권의 주체인 국가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 자격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심판절차 계속 중 사망한 경우,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사망과 동시에 당연히 그 심판절차가 종료된다.
20. 정답 ④
①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은 교육감을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 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은 '서로 상이한 권리주체간' 의 권한쟁의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헌재 2016.6.30, 2014헌라1).
② (○)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지방의회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장 간의 권한쟁의심판은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헌재 2010.4.29, 2009헌라11).
③ (○) '국민' 인 청구인은 그 자체로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국민' 인 청구인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되는 '국가기관' 이 아니다(헌재

2017.5.25, 2016헌라2).
④ (×) 국가기관의 부분 기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소속기관의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 소송담당'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 체계하에서는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의 조약에 대한 체결·비준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7.7.26, 2005헌라8).
⑤ (○) 청구인이 법률안 심의·표결권의 주체인국가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 자격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심판절차 계속 중 사망한경우,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승계되거나 상속될 수 없어 그에 관련된 권한쟁의심판절차 또한 수계될 수 없으므로,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사망과 동시에 당연히 그 심판절차가 종료된다(헌재 2010.11.25, 2009헌라12).

21. 대통령의 궐위 및 사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의 해외순방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고'에 해당하므로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대행하여 국무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② '궐위'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권한대행의 순서는 법에 명문화되어 있지만, 권한대행 사유 해당 여부를 누가 판단하는지에 대해서는 헌법상 명문규정이 없다.
③ 헌법은 대통령의 권한대행 순서를 국무총리, 부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으로 규정하고 있다.
④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된다.
⑤ 대통령선거의 당선자가 확정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궐위되면 헌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보궐선거를 해야 하는지,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할 때까지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21. 정답 ③
① (○)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지만 대통령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경우는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14.12.19, 2013헌다1).
② (○)
③ (×)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헌법 제71조).
④ (○)
⑤ (○)

22. 국정감사 및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948년 헌법(제헌헌법) 이후 현행 헌법까지 국정감사에 관하여 규정하여 왔다.
②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하게 한다.
③ 국회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④ 본회의는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으나, 활동기간을 단축할 수는 없다.
⑤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9월 10일부터 40일간 감사를 행하지만, 본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2. 정답 ②
① (×) 제4공화국, 제5공화국 헌법은 국정감사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② (○)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하게 한다(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③ (×) 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2. 지방자치단체중 특별시 · 광역시 · 도. 다만,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지방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 다만, 이 경우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 한한다.
④ (×) 본회의는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받고 조사를 장기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⑤ (×)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23.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117조제1항에 규정된 자치권에는 자치입법권은 물론이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와 처우를 스스로 결정하고 이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권한이 포함된다.
② 조례제정은 원칙적으로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한정되며,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지만, 기관위임사무라도 개별법령에서 위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법령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포괄적 일반감사를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령위반행위가 확인되거나 위법행위가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위법사항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제를 본질로 하는 민주적 지방자치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 내린 현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 역시 다른 선거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24조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권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3. 정답 ③
① (○) 헌법 제11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자치권 가운데에는 자치에 관한 규정을 스스로 제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은 물론이고 그밖에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와 처우를 스스로 결정하고 이에 관련된 예산을 스스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권한이 성질상 당연히 포함된다(헌재 2002.10.31, 2002헌라2).
② (○)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이 때 사무란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를 가리키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한하므로,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사무일 뿐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사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기관위임사무에 있어서도 그에 관한 개별 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례 제정권과 무관하게 이른바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다(대판 1999.9.17, 99추30).
③ (×) 중앙행정기관이 구 지방자치법 제158조 단서 규정상의 감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특정한 법령위반행위가 확인되었거나 위법행위가 있었으리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하고, 또한 그 감사대상을 특정해야 한다. 따라서 전반기 또는 후반기 감사와 같은 포괄적 · 사전적 일반감사나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개시하는 감사 또는 법령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모두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9.5.28, 2006헌라6).
④ (○) 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⑤ (○) 주민자치제를 본질로 하는 민주적 지방자치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린 현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을 지방의회의원 선거권, 나아가 국회의원 선거권 및 대통령 선거권과 구별하여 하나는 법률상의 권리로, 나머지는 헌법상의 권리로 이원화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 역시 다른 선거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24조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권으로 인정하여야 한다(헌재 2016.10.27, 2014헌마797).

24.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모든 표현에 사전검열금지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의료광고나 건강기능식품 광고에는 사전검열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방송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로 하여금 텔레비전 방송광고의 사전심의를 담당하도록 한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③ 상업광고 규제에 관한 비례의 원칙 심사에 있어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인지'를 심사하는 정도로 완화되는 것이 상당하다.
④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규제대상으로서의 '불온통신'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서의 '건전한 통신윤리'라는 개념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4. 정답 ①
① (×) 헌법상 사전검열은 예외 없이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의료광고 역시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헌재 2015.12.23, 2015헌바75).
② (○) 방송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로 하여금 텔레비전 방송광고의 사전심의를 담당하도록 한 것이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헌재 2008.6.26, 2005헌마506).
③ (○) 상업광고에 대한 규제에 의한 표현의 자유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의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도출되는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야 하지만, 상업광고는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 시민적 표현행위와는 차이가 있고, 인격발현과 개성신장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한 것은 아니므로, 비례의 원칙 심사에 있어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인지'를 심사하는 정도로 완화되는 것이 상당하다(헌재 2005.10.27, 2003헌가3).
④ (○)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금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2002.6.27, 99헌마480).
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의 하나로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를 규정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중 '건전한 통신윤리' 부분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헌재 2012.2.23, 2011헌가13).

25.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ㄴ. 국무총리제도가 채택된 이래 줄곧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서울이라는 하나의 도시에 소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 국무총리의 소재지는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으로 간주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규범이 존재한다는 국민적 의식이 형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ㄷ. 대통령이 국무총리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며,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ㄹ. 헌법상 국무총리의 지위는 대통령의 첫째가는 보좌기관이지만 그 사실만으로 곧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않는 행정기관은 법률에 의하더라도 이를 설치할 수 없다든가 또는 모든 행정기관은 헌법상 예외적으로 열거된 경우 등 이외에는 반드시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아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5. 정답 ④
ㄱ. (○)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정부조직법 제18조 제1항).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정부조직법 제18조 제2항).

ㄴ. (×) 청구인들은 국무총리제도가 채택된 이래 줄곧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서울이라는 하나의 도시에 소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들어 이에 대한 관습헌법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무총리의 소재지는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라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러한 규범이 존재한다는 국민적 의식이 형성되었는지 조차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관습헌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05.11.24, 2005헌마579).
ㄷ. (○) 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2항).
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이내로 한다(인사청문회법 제9조 제1항).
ㄹ. (○) 우리 헌법상 국무총리의 지위의 바탕은 그가 대통령의 첫째 가는 보좌기관인 점에 있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비록 국무총리가 헌법상의 정부의 제2인자인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곧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않는 행정기관은 법률에 의하더라도 이를 설치할 수 없다든가 또는 모든 행정기관은 헌법상 예외적으로 열거된 경우 등 이외에는 반드시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아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헌재 1994.4.28, 89헌마86).